

제1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제2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3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성숙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이룩한다.

제4조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제5조 올바른 모터스포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국제자동차연맹이 진행하는 상별 관련 사항과 회원간 분쟁 조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제6조 모터스포츠 전반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모터스포츠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모터스포츠 가치를 훼손하는 비리와 부정, 차별과 폭력을 철저히 배격한다.

제9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제1조 총칙

제1.1조 자동차경기의 국제적 총괄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은 각국의 자동차경기와 기록을 관장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권한 기구이고 FIA 국제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최종 국제심의 기관이다. FIA는 1바퀴, 2바퀴, 3바퀴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상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2조 국제스포츠 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ISC)

FIA는 스포츠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제스포츠규정을 제정한다. 국제스포츠 규정 및 그 부칙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제스포츠 규정은 경기 및 선수의 참가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단, 모터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FI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자동차경기의 국내적 총괄

FIA에 가입하는 각 나라의 클럽과 단체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ASN은 FIA가 각 나라 별로 스포츠 권한을 인정한 유일한 단체로 해당 국가의 국내스포츠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자동차경기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취소

각국의 ASN은 FIA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부여된 스포츠 권능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자국의 다른 일개 혹은 여러 개의 단체에 위임하는 권리를 가지며 FIA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권

각국의 ASN은 국내스포츠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FIA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제1.6조 국내의 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FIA에 의하여 한국 대표로서 공인되며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의하여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한 단체이다.

제1.7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과 시행

KARA는 전조의 권한을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FIA의 국제스포츠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스포츠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4륜차 이상의 자동차가 참가하고 국내에서 조직되는 KARA의 모든 공인 경기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와 정의

제2.1조 개요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은 국내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및 부칙에 준한 모든 특별규정에서 적용되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1. FI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 Automobile)

국제자동차연맹의 약칭으로 공인된 각국 자동차단체에 의하여 구성된 유일한 국제적 기관이다.

2. ASN (Authority Sporting National)

FIA에 의하여 공인된 각국 국내의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의 약칭이다.

3. KARA

본 협회의 영어명(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의 약칭이다.

4. 자동차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항시 제어하는 운송 수단.(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을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5. 실린더 용량

1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으로 생기는 배기량을 말한다. 이 용량은 세제곱 센티 미터로 나타내고, 실린더 용량에 대한 계산의 원주율은 항상 3.1416으로 한다.

6. 클래스구분

자동차의 실린더 용량이나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준한 자동차의 구분이다.

7. 대회 (Competition), 경기 (Event)

대회(Competition)는 개별 결과를 갖는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결승, 연습주행, 예선 주행과 카테고리별 결과로 구성된다. 경기 종류에는 서킷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경기,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등이 있으며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들이 있다.

경기(Event)는 여러 개의 대회(Competition), 퍼레이드, 데모 주행,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등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8. 짐카나

가속,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로, 정해진 코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주행하는 경기이다.

9. 드리프트

포장된 노면에서 접지 면과의 마찰력, 자동차의 관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컨트롤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다.

10. 서킷 레이스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은 세션 내에 출발하여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고 속도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의 주행거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를 말한다.

11. 드래그레이스

2대의 차량으로 정확하게 거리가 측정된 직선 코스에서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하여 (페널티 없이) 피니쉬 라인을 먼저 통과한 차량이 이기는 가속 경기를 말한다.

12. 오프로드 경기

비포장노면을 포함한 서킷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은 세션 내 동일한 코스를 주행

하고 속도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 주행거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를 말한다.

13. 국제경기

FIA에서 공표한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일반 규정에 따른 국제 안전의 표준 수준을 획득한 경기를 말한다.

FIA 또는 타 ASN 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여야 한다.

14. 국내경기

국내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 제3조에 의거 KARA 공인 하에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 1) 오직 KARA에 등록된 팀과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
- 2) KARA의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

15. 제한된 경기 (RESTRICTED EVENT)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 참가자 혹은 선수가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국내경기 혹은 국제경기를 제한된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최자 초대 참가에 의한 경기는 제한된 경기이다.

16. 클로즈드 (CLOSED) 대회

국내 경기가 KARA가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Closed) 경기라고 한다. 이 경우 KARA의 공인을 받아야 하며 때에 따라 여러 클럽이 개최할 수 있다.

17. 랠리 (RALLY)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 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루트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루트, 또는 공통 루트가 아예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루트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18. 테스트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 각 경기 참가자가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말한다.

19.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오직 KARA만이 국내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는 오직 KARA나 KARA로부터 서면에 의해 승인된 주최자(대회주최자)만이 개최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은 클래스별, 참가대상 선수별, 지역별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경기 당 평균 엔트리 숫자가 15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

20.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KARA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를 대변하여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이며,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1인, 대회주최자를 대표하는 1인, 경기 기술적 측면을 책임지는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집합체를 말한다.

21. 공인 (Organizing permit)

국내경기 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대해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에 맞추어 기록, 조직, 일정, 특별규정 등을 KARA가 허가하고, KARA 캘린더에 등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22. 특별규정

해당 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서 주최자가 KARA의 승인을 받은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말한다.

23. 공식 프로그램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공식문서를 말한다.

24. 코스

경기에서 선수가 주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25. 서킷

시작과 종료지점이 같고 고유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를 위해 특별하게 건설되었거나 특별하게 설치된 폐쇄된 코스를 말한다.

서킷은 설비의 특성 및 경기에서의 이용도에 따라 임시, 준상설, 상설로 나눌 수 있다.

26. 스피드웨이

4개의 코너를 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상설 서킷을 말한다.

27. 마일 및 킬로미터

미터법에 의하여 1마일은 1.609344km로 하고, 1km는 0.621371mile로 환산 측정한다.

28. 기록 (Record)

규정되어 있는 특별조건 아래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말한다.

29. 지역기록 (Local Record)

선수의 국적에 상관없이 ASN에 의하여 승인된 상설이나 임시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을 말한다.

30. 국내기록 (National Record)

선수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ASN이나 타지역의 ASN에 의하여 승인된 규정하에 세워지거나 갱신된 기록을 말한다.

국내기록은 그 기록철헌지에 적합한 차량의 규격이 세분화된 클래스 중 하나로 획득한 최고기록인 경우에는 국내 클래스기록(Class record)이라고 부르며, 또 클래스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기록인 경우에는 국내 절대기록(Absolute record)이라고 부른다.

31. 국제기록 (International Record)

국제기록이란 소정의 클래스 구분, 그룹 구분으로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의미한다.

이 기록에 관한 내용은 FIA 국제 규정을 따른다.

32. 세계기록 (World Record)

클래스에 관계 없이 차량이 수립한 최고의 성적으로 FIA에 의하여 공인된 기록을 말한다.

33. 기록보유자 (Holder of the Record)

개개의 기록철폐지에 있어서 수립된 기록은 도전 허가서의 명의인이고 그 공인신청서의 서명인을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경기중에 수립된 기록은 그것에 의하여 해당 성적이 수립된 자동차의 사용 명의인인 경기 참가자를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34. 출발 (Start)

스타트란 단독의 경기참가자나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 대하여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35. 컨트롤 라인 (Control Line)

그 장소를 차량이 통과할 때 계시되는 선을 말한다.

36. 출발선 (Start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37. 결승선 (Finish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38. 파크페미 (Parc Ferme)

파크페미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경기참가팀이 각 차량을 정해진 장소로 이동할 의무가 있다. 차량검차가 행하여지는 경기는 파크페미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39. 핸디캡 (Handicap)

차량이나 선수에 대해서 공평성을 주기 위하여 경기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방법이다.

40. 경기참가팀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경기참가를 정식으로 접수한 팀을 말한다.

41. 선수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소지자로 경기에서 경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42. 라이선스 (Licence)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차량제조사,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등)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각 등록 규정에 준한다.

43. 라이선스 등록명부

KARA에 의해 선수 라이선스를 발행 받은 자의 명부로 KARA가 보관한다. 등록명부에는 개개의 라이선스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라이선스 번호 (Licence Number)

라이선스 발급 시 KARA에 의해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45. 출장정지 (Suspension)

출장정지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국내 경기 또는 FIA의 총괄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각종 경기 참가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46.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것을 말한다.

47. 국적

KARA에 등록된 팀이나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는 라이선스 기한 동안은 대한민국 선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FIA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한해서는 선수의 여권 국적을 공식문서, 기록, 시상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경기규정

제3.1조 규정의 일반적 적용

국내에서 개최되어 KARA의 공인을 받는 모든 경기와 모든 행위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3.2조 경기의 개최

대한민국 내 개최되는 자동차경기는

1. KARA가 주최하거나
2. KARA가 허가한 주최자만 주최가 가능하다.

제3.3조 공식문서

모든 경기는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공식문서 중 본 규정에 상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는 그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4조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

경기의 특별규정, 공식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등의 모든 문서에 명확하게 '본 경기는 FIA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에 의거해서 개최한다(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the National Competition Rules of KARA)'고 명시해야 한다.

제3.5조 규정의 정통 및 준수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KARA에 라이선스의 교부를 신청하고 다음의 조항을 숙지한 후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FIA의 정관과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KARA의 정관과 국내스포츠규정을 숙지한다.
2.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따를 책임을 갖는다.
3.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KAR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4.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3.6조 공인에 대한 취소

경기 조직 및 운영 시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을 어겨 안전 또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에 대해 벌칙이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공인 경기 중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인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조건적 공인도 가능하며, KARA는 이유를 밝히고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경기의 연기 또는 중지

경기는 연기 혹은 중지의 규정이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심사위원회가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 또는 중지 할 수 없다.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중지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조직

제4.1조 주최자

경기를 조직하는 단체, 팀, 개인을 주최자(대회주최자)라고 한다. 주최자는 그 권한과 의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제4.2조 주최자의 등록

KARA가 공인하는 경기를 개최하려는 주최자는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따라 KAR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4.3조 경기공인

어떠한 경기도 KARA의 경기 공인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KARA는 필요에 의해 부분적 또는 조건적 공인을 부여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4.4조 경기공인의 신청

국내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회공인신청서, 대회특별규정(스포츠규정 및 기술규정) 공인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경기의 공인 신청은 대회 개최 20일 전까지로 한다. KARA가 신청에 대한 비용은 매 해 발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부칙을 따른다.

제4.5조 경기공인 증명의 발급

KARA는 경기 공인 증명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제4.6조 법률 및 규정의 준수

경기는 일반 공도 혹은 서킷 또는 양쪽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조직 위원회가 관계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경기 공인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

1. 경기가 일반교통에 공개되어 있는 공도상에서 행하여질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어 있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교통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제4.7조 대회특별규정의 내용

대회의 특별규정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조문 (본 규정 제3.4조 참조)
2. 경기의 명칭과 경기 종목 (제2조 용어와 정의 참조)
3. 주최자의 주소와 이름
4. 경기의 장소, 일정
5. 심사위원 명단, 주요 오피셜 명단, 경기장 설명
* 레이스 디렉터 선임시 그 의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6. 경기의 세부사항, 경기차량의 세부적인 제한, 선수의 자격과 정원
7. 참가신청 기간

8. 참가비
9. 선수 지명의 최종 기일과 장소, 그 밖의 특별사항
10. 보험에 관한 사항
11. 선수의 교대나 자동차의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것에 따른 특별사항
12. 공식 검차 일정
13. 공식 예선의 일정과 방법
14. 스타트 일시와 방법, 핸디캡의 규정
15. 스타트 시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 규정
16. 경기중의 연료보급에 관한 규정
17. 항의에 관한 특별사항
18. 경기의 중단, 연기, 중지예 관한 특별사항
19. 결승 심사방법과 순위 판정방법
20. 시상방법
21. 경주차의 안전규정(롤케이지, 소화장치, 전원차단장치, 견인고리등)
22. 경주차 무게측정의 정확한 기준과 부품의 사용, 개조의 범위등
23. 그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특별규정의 변경

경기의 참가접수가 끝난 후에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KARA와 경기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을 때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된 특별 규정에 대해 드라이버 브리핑 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서로 공식 계시의 의무를 가진다.

제4.9조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

경기의 공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게시판과 대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본 규정 중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제3.4조 참고)
2. 주최자와 조직위원의 이름
3. 경기 장소와 일정
4. 경기 시간과 간단한 설명
5. 팀과 선수의 이름, 경기차량에 주어진 식별용 번호 및 표시
6. 핸디캡이 주어지는 경우의 규정
7. 각 경기별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
8. 경기심사위원회의 이름, 경기위원장 및 주요 오피셜의 이름
9. 공인 단체의 표기

제4.10조 경기참가등록

경기참가자와 주최자의 계약은 본 규정과 특별규정에 따른 참가신청이 수리되는 것에 따라 성립된다. 이로 인하여 경기참가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4.11조 참가에 관한 분쟁

경기참가자와 주최자간에 참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본 규정 '항소권' 규정에 따라 그 재정을 KARA에 신청하고 KARA는 이를 조정한다.

제4.12조 참가신청의 개시

주최자는 경기의 공인을 받은 후 참가자격이 있는 참가자에게 참가접수를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입사항을 기재, 서명하고 참가비와 함께 마감 전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제4.13조 참가신청서의 내용

참가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사항. (제3.4조 참고)
2. 선수, 경기참가팀, 경기 참가자의 이름과 KARA 라이선스 번호
3. 참가신청은 참가자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나 서명은 반드시 선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4.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에 근무하는 팀 관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5. 본 규정 중 다음 조항 (경기참가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요원의 계약문의 서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및 서명은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하여도 된다.
6.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신청서 기입사항

제4.14조 경기참가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의 참가서약

1. 경기참가팀 관계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은 경기참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을 한다.

“나는 이 대회와 특별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국내스포츠규정에 동의합니다. 나는 경기 참가에 따라 관련되어 일어난 사망, 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로 KARA나 주최자, 조직위, 오피셜에게 경기에 관한 비난, 책임추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고가 상기 주최 단체와 대회 관계자의 실수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또 선수의 참가종목에 관한 표준능력을 가지고 참가차량도 코스와 스피드에 관해 적격하고 경기가 가능한 것을 맹세합니다.”

2. 이에 붙여 선수는 다음 양식의 서약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는 이 경기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서 지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KARA와 대회주최자에 알리고, 신체장애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교부 받지 않는 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전항 1,2에 규정한 서약문서에 18세 미만의 참가신청자의 경우 당사자의 부모와 보호자가 신청서 및 별도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15조 참가신청의 마감

참가접수 마감의 기한은 대회 특별규정을 따른다. 대회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KARA선수 라이선스 취득자에 한해 참가 접수를 받아야 한다.

제4.16조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참가신청

참가 등록의 신청은 우편, 팩시밀리, 이메일 그 밖의 통신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단 신청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참가비가 첨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당 통신 수단에 기재된 발신 시간을 가지고 접수 날짜의 증거로 한다.

제4.17조 허위 또는 부정기입의 참가신청

허위 또는 부정기입을 한 참가신청은 무효이고 그 경우 신청자는 본 규정 위반으로 되어 참가비를 몰수당한다.

제4.18조 참가신청 거부

조직위원회는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늦어도 경기 개최 5일 이전까지 거부의 이유를 밝힌 뒤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거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본 규정으로 인하여 참가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참가비는 반환된다.

제4.19조 참가신청 조건부 승인

특별규정으로 조건부 참가가 가능한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0조 참가신청서의 접수 통지

조직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승인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원을 넘는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법을 택하되 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다른 방법을 주최자가 정할 수 있다.

제4.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

조직위원회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팀,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4.22조 조건부 참가 승인

참가자가 본 규정 제4.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정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참가접수가 인정된다.

제4.23조 동일 차량의 중복 참가

한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경기에 한번만 참가신청이 허용되나 KARA가 본 규정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장이 가능하다. 단, 챔피언십 경기는 동일 선수로 운전하면 안 된다

제4.24조 자동차의 교환

참가신청서의 기입사항과 상이한 출전차량이 있는 경우 공식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에도 경기심사위원회의 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규격에 일치하면 동일 부분, 동일 클래스의 다른 자동차로 교환이 허용된다.

제4.25조 공식 통지

특별규정의 발표 후에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주최자와 경기참가자, 선수에 대해 공식 통지로 지시할 수 있다.

제4.26조 보험

조직위원회와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근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KARA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보험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7조 경기참가자 및 선수의 공식 명단

조직위원회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경기 시작 48시간 전까지 KARA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 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최소한 공식 검차와 선수 브리핑 직후 최종 엔트리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28조 성적 발표

조직위원회는 KARA와 각 경기참가자에 대해 경기가 종료되고 5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 내에 경기의 최종성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4.29조 상금 등의 수여

조직위원회는 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경기의 최종성적 판명 후 3주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까지 모든 상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 코스-도로 및 서킷

제5.1조 공공도로상의 경기코스

경기에 사용되는 도로의 선정은 KAR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기코스의 승인신청은 주행로와 거리를 정확히 표기한 코스도를 첨부하여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일반도로상의 주행거리 측정

기록챌린지 이외의 경기 사용코스는 그 거리가 5km 이내의 경우 공인측량사가 도로중앙선을 계측하여야 한다. 5km 이상은 5만분의 1 이상의 국토교통부가 인증하거나 판매하는 지도를 통하여 정한다.

제5.3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 라이선스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국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KARA를 통하여 FIA에 신청하여야 한다. FIA는 KARA와 협의하여 부적당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FIA는 거부나 취소 시 그 이유를 알려준다.

제5.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KARA가 부적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기재문

FIA에서 발급되는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 허가되는 경기 차량의 카테고리, 서킷 또는 코스가 국제 또는 세계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명기한다. KARA허가의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와 국내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를 기재한다. 또한 서킷 또는 코스에 관한 특별 규정도 기재되어 경기 참가자가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조건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충족조건은 FIA나 KARA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5.7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공시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는 그 유효기간 중 서킷 또는 코스의 일정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비

FIA나 KARA가 발급하는 서킷 또는 코스 공인에 대한 라이선스비는 FIA나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스타트 및 히트

제6.1조 스타트

1. 스타트란 단독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게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시간 측정을 할 때에는 스타트와 함께 시작한다. 스타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 ① 롤링 스타트
 - ② 스탠딩 스타트
2. 선수는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도 스타트의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기록철헤린지 이외의 경기는 그 스타트의 종류를 반드시 특별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6.2조 스타트라인

1. 기록철헤린지와 롤링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이 통과함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개시되는 기준선을 말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또는 필요시 각 선수)이 출발 전에 지시 받은 정위치해야 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3. 특별규정에는 스타트 전의 모든 차량의 위치와 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6.3조 롤링 스타트

롤링 스타트란 시간 측정이 개시된 순간에서 차량이 이미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롤링 스타트는 스타트신호가 나오기 전에 세이프티카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별도의 경기 규정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 때 유도차를 제외한 선두의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지나는 순간 또는 별도의 신호가 제시되는 시점에 스타트가 성립된다.

제6.4조 스탠딩스타트

스탠딩스타트란 스타트 신호가 나는 순간에서 차량이 정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기록은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계측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차량의 부분이 그 스타트라인보다 10cm 후방에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 차량의 엔진은 스타트에 앞서 시동시킨 것으로 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경기는 스타트에 앞서 엔진의 시동과 정지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독 스타트 또는 동시 스타트의 차량에 대하여:
 - 자동계측장치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행하여질 경우 그 차량(들)은 스탠딩스타트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계측장치에 의해 시간 측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계에 의한 시간 측정이 행하여 지는 경우 그 차량(들)은 프런트 휠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위치로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트라인 위치에 관계없이 특별규정으로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를 규정한 경우라도 시간 측정은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시작된다. 이 때 서킷의 경우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에 관계 없이 1랩째부터 각 차량이 계측라인을 지날 때 계측을 한다.
5. 스타팅 그리드의 최종발표가 있는 후에는 스타트 불가한 차량의 그리드는 비워둔 채로 두고 그 외의 경기 참가차량에게 공표된 그리드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스타터(Starter)의 명령

선수와 출전차량은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거나 내려질 때 스타트 할 수 있다.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고 내려짐은 다른 적당한 신호를 동반하여도 되고 신호등으로도 가능하다.

제6.6조 반칙 스타트에 대한 벌칙

스타트 신호 이전에 제위치에서 전진한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부정출발을 한 운전자는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그 경기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벌칙이 가산된다. 그 벌칙은 곧바로 그 선수의 피트에 통보되어야 한다.

특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밝힌 벌칙을 가중하거나 다른 벌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 스타트 오피셜

조직위원회는 스타트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다. 스타트 오피셜은 반칙 스타트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그 경기위원장에 보고한다.

제6.8조 히트

하나의 경기에서 복수의 히트제 스타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며 사전에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에 발표하여야 한다. 히트제 스타트의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만이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7조 기록

제7.1조 판정 관할권

KARA는 한국 국내에서 수립된 기록의 공인신청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기록이나 세계기록의 공인신청은 KARA에 의하여 FIA에 제출되고 그 판정은 FIA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기록수립의 자격을 갖는 차량

각각의 국제기록은 본 규정 제9조의 정의에 적합한 차량에 의하여서만 수립이 가능하다.

제7.3조 공인기록

공인기록이란 지역기록, 국내기록,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만을 말한다. 한 개의 같은 기록은 상기 구분된 분류에 의하여 여러 종류로 공인 받을 수 있다. 서킷에서 수립된 기록과 도로에서 수립된 기록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7.4조 클래스별로 제한된 기록

그 클래스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갱신한 차량은 동일 클래스에 해당하는 세계기록을 수

립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위의 클래스에서 기록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7.5조 공인기록 및 거리

국내기록, 국제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항에 실린 기록과 거리에 의해 공인 받을 수 있다. KARA는 자체적으로 국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제7.6조 레이스 중에 수립된 기록

레이스 중에 수립되지 않은 기록은 어떠한 것도 공인하지 않는다.

제7.7조 기록의 등록

KARA는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갱신된 기록의 등록을 공지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국내 기록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기록의 발표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 승인 중’이라고 명기하지 않는 한 관계자는 어떠한 상업적 광고로 사용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8조 경기참가자와 선수

제8.1조 경기참가팀 및 선수의 등록

공인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는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제8.2조 라이선스의 발급

KARA는 FIA 국제 라이선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 일정한 양식에 의한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제8.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라이선스는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8.4조 임시 경기참가 허가 조건

KARA외 타 ASN 발급 선수 라이선스를 소유한 자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KARA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제8.5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KA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라이선스 유효기간 동안에는 한국 선수로 준한다.

제8.6조 라이선스의 발급거부

KARA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이선스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7조 라이선스의 유효기한

국내 개인 라이선스(선수, 오피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타 단체 라이선스와 FIA 국제 라이선스는 매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8조 라이선스의 수수료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9조 라이선스의 효력

1. KARA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 선수 라이선스나 국내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KARA 공인 경기와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대회 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선수 라이선스의 소지자가 그 유효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격(운전면허증)을 상실했을 때에는 라이선스는 무효가 되고 곧바로 KARA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10조 라이선스의 취소

금지된 경기, 비공인경기에 참가, 운전, 직무 수행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가한 자는 KARA에 의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8.11조 선수의 변경

1. 참가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특별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다.
2. 참가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위원회는 선수 교체 및 추가 선수 명단을 KARA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2조 경기참가자, 선수, 그 외 관계자의 책임

경기참가팀은 지명한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국제스포츠 규정, 본 규정, 경기 특별규정, 공식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경기참가자와 팀은 대회에서 얻은 정보를 대회의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별도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제8.13조 참가 변경 금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에 참가를 등록한 경기참가자나 선수가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경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개최일로부터 KARA가 정하는 기간동안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단, 그 경기가 외국에서 개최됐을 경우는 KARA와 해당 ASN사이에 있어 벌칙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양 ASN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제는 FIA에 제소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자동차

제9.1조 자동차의 분류

KARA는 기록챌린지의 경우를 제외한 국내경기에 참가하는 자동차를 국내경기 차량규

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9.2조 위험한 차량

국내경기에 출장하는 자동차는 구조와 주행적성, 장치에서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기심사위원회는 자동차의 구조나 상태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3조 방화벽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자동차는 화재발생시 화재가 직접 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과 운전자 사이에 유효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1.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모델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을 출장 정지,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을 따른다.

제9.5조 차량에 붙이는 광고

KARA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적용하는 특별조건을 규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9.6조 허위 광고

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 경기와 기록의 성질, 차량의 분류, 클래스 구분,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별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오피셜

제10.1조 오피셜의 구성

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각 위원장은 보조요원의 배치,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 돕는다.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사무국장 및 요원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 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 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 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medical)

제10.2조 감독권

KARA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총괄되는 국내의 모든 대회에 있어서 모터 스포츠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

1. 최소 필요 임원

경기는 적어도 경기심사위원 3명과 경기위원장 1명을 두고 시간 측정에 의한 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1명 이상의 기록위원을 두어야 한다.

2. 레이스 디렉터

각각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에서 경기 전 기간 동안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스 디렉터의 의무와 권한을 관련 경기 규정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KARA의 심사 파견 및 승인

KARA는 KARA가 주최하는 경기나 공인을 부여한 경기에 대하여 적어도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임명,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오피셜들은 KARA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임명할 수 있다.

제10.5조 이익의 충돌

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오피셜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상업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6조 겸직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심사위원을 제외한 동일자가 본 규정 제10.1조에 명시된 임무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겸임 할 수 있다.

제10.7조 금지된 임무

어떠한 임원도 하나의 경기에서 임명받은 것 이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어떠한 오피셜도 자기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외의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0.8조 오피셜의 보수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그외 오피셜들은 KARA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9조 심사위원회의 책임

1. 심사위원은 경기의 조직이나 경기 주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2. KARA가 직접 주최하는 경기의 경우는 심사위원이 주최자의 임무를 겸임하여도 된다.
3.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 특별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4. 공식 스케줄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 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5. 공식 스케줄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엠블런스, 소화기 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6.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줄의 시작을 지시한다.
7.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서명하여 KARA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각의 경기의 성적결과 및 제출된 모든 항의 또는 선고한 출장 정지(실격)의 상세한 보고가 포함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부과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회는 참가 선수, 오피셜의 KARA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경기가 행하여지는 대회의 경우에는 경기마다 다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11. 심사위원장은 대회를 계획하고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투표에 있어서 동수가 되었을 경우 재결정권을 가진다.

제10.10조 심사위원의 권한

1.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2. 경기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이런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3. 규정위반의 경우 적용하는 벌칙을 결정한다.
4. 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히트 경기의 경우 그 구성이나 경기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6. 동률의 경우 재스타트(new start)를 허가할 수 있다.
7. 선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8.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9.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출장정지(실적) 처리를 할 수 있다.
11. 순위 변경을 할 수 있다.
12.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차량이나 선수는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3.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14.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나 국가보안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16. 경기참가자와 대중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 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17.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19. 기술 검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 특별한 경우 대리의 심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1. 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10.11조 경기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준한 KARA의 권한

KARA는 경기심사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황 및 관계자를 조사하여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2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
2.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경우 그 임무와 책임이 아래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대회 특별 규정에 명시한다.
3. 레이스 디렉터는 항상 경기위원장과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4.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청하여 일정표를 변경할 수 있다.
6.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사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스타트의 진행
8. 세이프티 카의 사용

제10.13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 각 경기마다 별개의 경기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경기위원장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의 운영 책임을 진다.
4. 치안의 책임을 갖고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파견된 행정당국과 연락하여 경기장내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오피셜이 각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6. 모든 오피셜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한다.
7. 참가의 자격을 갖지 않는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8. 각각의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9. 지명 받은 선수가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동차를 종목과 클래스에 따라 통제한다.
10. 자동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여 출발시킨다.
11.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 제안과 경기참가자의 부정행위, 규정위반, 경기참가자의 이의신청의 제안을 행한다.
12.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경기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3. 기록위원, 기술위원, 코스위원의 보고서와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14. 담당한 경기에 관하여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경기 사무국장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0.14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오피셜을 모집하고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또한 오피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장비, 물자등의 제공을 담당한다.
3. 모든 오피셜이 각각의 임무에 정통하고 필요한 부대적 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각 경기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기위원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에 정확한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참가 엔트리 및 모든 대회 문서 관리하며 대회결과를 게시하고 발표한다.
6. 경기 스케줄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7. 시상식의 진행을 담당한다.
8. 경기에서 발생하는 벌금을 납부 받는다.

제10.15조 기록위원장의 임무

기록위원장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의 개시와 함께 경기위원장의 필요한 지시를 부여 받는다.
2. 경기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경우 스타트의 신호를 한다.
3. 계측은 KARA에 의하여 승인된 계측장치만을 사용하고 1000분의 1초까지의 계측을 필요로 한다.
4. 각 차량이 코스를 완주하여 얻은 기록을 확정한다.
5. 자기의 책임하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기록챌린지 내지 테스트의 경우는 KARA에 제출한다.)
6. 기록위원장은 심사위원이나 KARA의 요구가 있으면 계측 기록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다.
7.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한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 이외의 사람에게 공식기록이나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제10.16조 기술위원장의 임무

기술위원장은 자동차의 기계장치에 관한 모든 검사를 담당한다. 기술위원장은 경기위원장과 함께 자동차의 중량과 차체, 부속품의 치수, 차량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전장비, 경기참가팀, 선수의 서류(선수증, 운전면허증, 보험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모든 점검을 담당한다.

1. KARA나 경기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경기 개시 전, 경기 개최 중, 종료 후 그 검사를 실시한다.
2.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검차 장비를 사용한다.
3. 검차의 공식결과를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경기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4. 기술위원장은 그 책임하에 검차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3항에 명시된 자에게 제출한다.

제10.17조 피트위원장의 임무

1. 피트 위원은 경기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행하는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규정 및 특별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2. 피트 위원장은 경기위원장의 지휘 하에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행한 모든 위반 행위를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트 위원장은 각 경기의 종료 후 주어진 지시에 따라 경기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임무에 관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제10.18조 코스위원장과 트랙 마샬(코스요원)의 임무

1. 코스요원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코스상의 포스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코스요원은 경기 개시 후 경기위원장의 지휘하에 각자의 포스트가 관찰하는 구역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무전,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코스요원은 코스 상에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담당할 수 있다.
4. 각 경기 종료 후 코스요원은 자기가 확인한 사고에 대하여 문서로 코스위원장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코스위원장은 트랙 마샬의 배치, 근무 환경, 무전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한다.

제10.19조 안전위원장의 임무

1. 안전위원장은 구난, 소방, 의료 팀에 대한 전체 책임과 총괄을 맡는다. 이는 각 팀의 조직, 장비 편성, 배치를 포함하며,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대응 팀을 운영한다.
2. 경찰 및 소방 당국, 지정 병원을 비롯한 유관 협조 기관 관리 및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10.20조 특별 오피셜의 지정

경기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 소방서, 서킷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선수 출신으로서 참가자의 주행에 관해 조언하는 인력(Driving Standard Adviser)을 특별 오피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오피셜은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벌칙

제11.1조 규정위반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반칙과 함께 다음 행위도 본 규정의 위반이 된다.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1. 경기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미수 행위
2. 해당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가거나 부적당한 차량으로 경기에 참가한 행위
3. 경기나 모터스포츠 일반에 관련한 부정행위
4. KARA나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제11.2조 벌칙

1. 주최자, 경기참가팀, 선수, 탑승자, 미캐닉, 팀 관계자, 오피셜 그 외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누구라도 본 규정과 부칙, 경기 특별규정과 고시, 경기 공인 등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2. 벌칙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KARA의 상벌위원회에 의해 제11.3조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안전 혹은 경기참가팀과 선수의 부정참가에 관한 경우 또는 동일경기 가팀과 선수가 동일 경기 중에 추가 위반함에 의해 실격 처분이 처해져야 할 경우에는 즉시 제외시킬 수 있다.
4. 단,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상기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제조치로서 제재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특히, 해당 경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이후의 경기 참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핸드 캡 규정의 적용 결정은 유보된다.
5. 항소에 대한 유예효과는 그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으며 공식 순위에도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6. 세계 도핑 방지 운동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정하는 FIA 안티 도핑 규정 내에서 관련된 벌칙을 적용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8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금지 목록」을 개정·고시한다.

제11.3조 벌칙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공익 업무 수행 의무
4. 기록 삭제
5. 그리드 순위 강등
6. 강제적 피트 스타트 (start a race from the pit lane)
7. 타임 페널티 (time penalty or penalty lap)
8.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drive-through penalty)
9. 스톱 앤 고 (stop and go)
10. 제외 및 실격
11. 출장정지

12. 자격상실

심사위원회나 KARA가 지정한 인원 및 단체는 조사를 진행하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외 및 실격, 출장정지,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서 변론의 기회를 준다.

제11.4조 벌금

벌금은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기위원회의 명령이 없이 행한 경기 참가팀, 선수, 탑승자 또는 팀 관계자에게 KARA 상벌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국제스포츠규정이나 FIA의 공식 공고에 의해 새롭게 통지 될 때까지 최고 벌금액은 250,000 유로로 한다.

제11.6조 벌금의 납부 책임

경기참가팀은 KARA, 경기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 등에게 부과되는 벌금 납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1.7조 벌금의 지불기한

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대회사무국을 통해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벌금미납 기간 중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3. 벌금은 KARA에 의해 모터스포츠 발전에 사용한다.

제11.8조 제외 및 실격 (Exclusion)

1. 제외 및 실격의 신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1) 제외는 그 대상이 된 자가 1경기 이상 참가가 금지되는 것이다.

- 2) 실격은 그 대상이 된 자가 참가한 1경기 이상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2. 제의 및 실격을 받으면 이미 지불되어 있는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9조 출장정지 (Suspension)

1. 출장정지는 중대한 반칙에 대하여 KARA와 FIA만 신고할 수 있다.
2. 출장정지는 그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권리를(벌칙의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KARA의 관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내적 경우와, FIA 총괄 아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제적 경우가 있다.
3. 출장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하여 이미 참가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되고 지불한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10조 라이선스의 회수

1. 국내출장정지 (National Suspension)

국내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내출장정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 및 발송한다.

2. 국제출장정지 (International Suspension)

국제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제출장정지 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해당 라이선스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상기의 조항에 있어서 KARA에 대한 라이선스의 반납이 지연했을 때는 출장정지의 기간은 그 지연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1.11조 출장정지의 효력

KARA에 의해 신고된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은 KARA의 관할 영역 내에 한정된다. 단, KARA가 그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KARA는 FIA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FIA는 그 취지를 다른 모든 ASN에 대하여 통지 한다. 각각의 ASN은 즉

시 그 출장정지를 등록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 이외에서의 출장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2조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자격상실은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격상실은 지극히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KARA에 의해 신고될 수 있다. 자격상실의 처분은 그 결과로 이미 한 참가 등록은 무효가 되고 참가비는 몰수된다.

제11.13조 자격상실의 효력

자격상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자격상실은 모든 ASN에 통지된다.

제11.14조 FIA에 대한 벌칙처분의 통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정지 및 자격 상실의 처분은 FIA가 신고한 벌칙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각 ASN에게 통보되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ASN에서 FIA에 통보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FIA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15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통지

KARA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FIA에 그 처벌을 행한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6조 자동차의 자격상실, 출장정지 또는 제외

특정자동차나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기 참가는 금지 될 수 있다.

제11.17조 수상 권리의 상실

경기 출장정지, 자격상실, 제외 처분을 받은 경기참가팀 및 선수는 그 경기에서 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11.18조 순위 및 상의 변경

제11.17조가 적용된 경우 심사위원회는 순위와 상에 관한 성적의 변경을 발표하고 다른 선수의 순위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1.19조 벌칙의 공표

FIA나 KARA는 개인, 팀, 자동차 등에 내려진 처벌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발표 또는 발표시킬 권한을 가진다. 처벌이 발표된 개인이나 단체는 FIA, KARA, 그 공시를 발표한 자에 대해 반대행동(소송)등을 취할 수 없다. 만약 반대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회원 및 회원단체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만 항소권은 보장된다.

제11.20조 벌칙의 사면

KARA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에 기준하여 부과한 자격상실처분의 기간을 경감, 자격 상실처분의 면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항의

제12.1조 항의권

1. 경기참가자가 주최자, 임원, 다른 경기참가자나 선수, 경기관계자의 결정, 행위, 과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됐다고 판단할 경우는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2.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은 항의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관계된 경기참가자 전원에 대해 각각 항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항의의 제출

경기에 관한 항의는 사무국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경기위원장의 부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된다.

제12.3조 항의 기한

1. 경기참가팀 혹은 선수의 참가 접수에 대한 항의 혹은 코스의 거리에 대한 항의는 공식 검차 후 2시간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핸디캡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경기 스타트 1시간 전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경기 중에 행하여진 반칙에 대한 항의, 차량규정위반에 대한 항의, 경기 종료 후에 결정된 순위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그 경기 순위의 잠정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정해진 금액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5. 주최자가 공식 결과를 사전 통보대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발표할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회는 항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12.4조 항의의 심문

1. 항의자 및 항의 대상인 자의 심리는 그 항의의 제출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2. 당사자는 소환되어야 하며 증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가 직접 소환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이 결석한 경우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당사자 대상 심리 후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추후 결정을 하며, 그 장소와 시간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 접수할 수 없는 항의

1. 직무 수행 중인 오피셜이 판정한 사실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번복은 가능하다.
2.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한 단일인의 항의는 수리되지 않는다.

제12.6조 결과 발표 및 시상

1. 항의 대상이 된 경기참가팀, 선수에 대한 시상은 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한다.
2. 항의 결과가 경기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잠정 순위만 발표 할 수 있으며, 모든 시상은 항의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한다.
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상도 가능하다.

제12.7조 재경기

경기심사위원회, KARA는 재경기를 지시할 수 없다.

제12.8조 항의의 무효

1. 항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 항의보증금은 몰수된다.
2. 항의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되어 있는 항의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완전히 인정을 받았을 경우 전액 반환될 수 있다.
3. 정당하지 않은 의도로 항의를 제출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항소

제13.1조 권한의 범위

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해서 KARA 회원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2조 국내 항소 기관

KARA는 KARA 회원 또는 비회원들로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상황에 따라 3인에서 5인(법적 자문단 제외)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경기의 경기참여자, 선수, 오피셜과 연관이 있는 자거나 항소 안전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연관 있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국내 항소 절차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 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10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항소의사는 이 시점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항소 의사 통보 후 항소를 취하하였을 경우 미리 지불한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는 몰수된다.

2. 잔여 항소보증금(300만원)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항소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항소보증금은 매년 KARA가 별도로 정한다.
3.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4.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5. KARA는 최대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4조 판결

1. 항소위원회는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벌칙의 경감, 가중을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할 권한은 없다.
2. 항소위원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제14.1조 규정의 해석

KARA는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터스포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시 본 규정이나 동부칙의 변경을 이사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제14.3조 그 외의 규정

그 외의 서술 되어 있지 않은 규칙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에 의거한다.

제14.4조 본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대회주최자 등록

1.1 자동차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대회주최자는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그에 기초한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국내스포츠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KARA 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등록은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KARA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무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 규정의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대회주최자의 분류와 대회 공인비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A, 대회주최자 B, 대회주최자 C로 분류되고, KARA의 권한 부여에 의거하여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1 대회주최자 A는,

2.1.1 협회에 등록된 팀이 출전하는 2개 클래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경기를 주최할 수 있다.

2.2 대회주최자 B는,

2.2.1 KARA에 등록된 팀 또는 개인이 출전하는 2개 클래스 이상의 아마추어 국내 경기를 주최할 수 있다.

2.2.2 대회주최자 B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선수 라이선스 B, C 소지자만이 참가하는 경기로 한정한다.

2.2.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2.3 대회주최자 C는,

2.3.1 KARA에 등록된 팀이 출전하는 경기 중 1개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국내 경기를 주최할 수 있다.

2.3.2 KARA에 등록된 아마추어 및 개인들이 참가하는 국내경기를 주최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클래스가 포함된 경기를 주최하고자 할 때에는 KARA 사무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초 종목이거나,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2.3.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2.4 국제경기 신청 보증금

타 ASN에 의해 경기 시리즈가 승인된 국제대회의 한국 개최시 공인신청자는 필요한 서류 접수와 보증금을 대회 개최 90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대회 완료 후 반환되나 경기 취소, 일자 및 장소 변경 등으로 FIA 및 KARA에 의한 페널티 발생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

만약, 페널티 금액이 보증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페널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대회 카테고리별 보증 금액

카테고리	보증금
플레티늄	20,000,000원
골드	10,000,000원
실버	5,000,000원
브론즈	3,000,000원
존 이벤트	1,000,000원

2.5 경기공인의 신청시 공인비는 KARA가 별도로 정한다. 단, 경기 공인 취소에 대해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를 제외하고 공인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 대회주최자의 신청자격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에 갖는 법인

3.2 공인경기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KARA의 제반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3.3 공인경기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해 연도 경기운영에 필요한 30%에 상당하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4 KARA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4.1 KARA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
- 4.2 사업자 등록증(법인, 일반 사업자).
- 4.3 당해 연도 경기운영계획서.
- 4.4 대표자 인감증명 1부.
- 4.5 대표자 사진 1매.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제6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심사

KARA는 사무국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 6.1 경기 주최능력과 운영능력.
- 6.2 제반 규정의 준수와 의무 이행의 실행 능력.
-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제한

KARA는 등록을 신청한 대회주최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기의 횟수, 경기의 명칭, 종류, 경기 카테고리, 경기클래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비

대회주최자 등록을 신청한 자는 KARA가 등록을 허가함과 동시에 KARA가 정한 등록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회주최자 A : 30,000,000원
- 대회주최자 B : 5,000,000원 / 연간 갱신비 : 1,000,000원
- 대회주최자 C : 500,000원 / 연간 갱신비 : 500,000원

본 대회주최자 등록비는 대회주최자 자격 상실 및 취소 시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 9.1 KARA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은 대회주최자 A, B, C의 자격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공인경기를 개최했을 시 자동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공인대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KARA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이 정지 및 상실될 수 있다.

제10조 대회주최자 자격의 상실

대회주최자 자격을 인정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KARA는 대회주최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KARA가 요청한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10.2 정당한 이유 없이 개최하고자 한 경기를 취소하였을 때.
- 10.3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한 경기도 개최하지 않았을 때.
- 10.4 정당한 이유 없이 대회주최자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을 때.
- 10.5 타 대회주최자의 업무 및 경기 개최에 피해를 가할 경우.
- 10.6 경기의 준비 또는 경기 후 처리 및 해당 경기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0.7 KARA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0.8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0.9 기타 KARA 사무국과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대회주최자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10.10 대회주최자 B, C의 경우 해당 연도 갱신비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10.11 KARA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기를 개최할 경우 벌칙이 부여될 수 있다.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대회주최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사유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회주최자의 특전

- 12.1 공인경기를 주최할 자격을 갖는다. 단, KARA 사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12.2 KARA의 국내스포츠캘린더에 기재, 등록될 수 있다.
- 12.3 대회주최자 A가 국제경기 개최 시 FIA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 신청 자격을 갖는다.
- 12.4 KARA로부터 모터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12.5 라이선스 발급은 KARA가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 12.6 공인경기의 개최에 관하여 등록 팀, 단체, 대회주최자 상호 간의 협조를 하도록 한다.

제13조 벌칙

대회주최자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경기 특별규정,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특별규정, 부적절한 경기일정 및 장소 변경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공인 하에 행하여지는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팀의 등록

- 2.1** KARA 공인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ISC규정) 및 부칙과 이에 기초한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반드시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
- 2.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등록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 2.3** 팀 구분과 참가 가능 대회

팀	챔피언십대회	컵, 트로피, 챌린지, 기타대회	비고
영구팀	O	O	선수 B, C 라이선스 추천 가능
단기팀	O	O	선수 C 라이선스 추천 가능
연간팀	O	O	선수 라이선스 추천 불가 / 짐카나, 카트, 드리프트, 입문 포뮬러 등 기초 종목의 경우 챔피언십 대회 참가 가능
아마추어팀	X	O	

제3조 팀의 신청 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인 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에 갖는 법인
- 3.2**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
- 3.3**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KARA의 라이선스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단, 아마추어팀은 이에 미달했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무국 심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결정한다.

제4조 신청서류

팀으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팀도 매년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한다.

- 4.1 KARA 소정의 신청 양식.
- 4.2 등록규정에 해당하는 비용.

제5조 팀의 신청

- 5.1 등록 신청서는 해당년도 공인경기 참가 전 우편, 전자 수단을 통해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 5.2 KARA는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 5.3 팀 등록이 거부 될 경우에 비용은 반환된다.

제6조 심사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한다.

- 6.1 경기 참가능력과 팀 운영능력.
- 6.2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의 실행 능력.
-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자격의 제한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비용은 별도로 정한 표를 따른다.

제9조 인증서

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팀은 KARA가 발부하는 인증서를 받는 때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제10조 팀 자격의 상실

팀 자격을 인정받은 팀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KARA는 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
- 10.2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 신청한 경기에 불참할 때.
- 10.3 KARA의 사무국에서 등록 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10.4 단기 등록팀의 경우 2년 이상 공식 경기 참가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 10.5 단기등록과 연간등록팀, 아마추어팀의 경우 해당연도 갱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팀 자격이 상실된다.
- 10.6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10.7 10.4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팀이 재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
- 10.8 KARA가 금지한 대회 및 비공인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자격상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10.9 팀의 권리와 명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팀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팀명 등),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에 보고하여야 하며, KARA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권한

공인팀으로 등록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2.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
- 12.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12.3 영구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와 B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고, 단기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12.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인 팀 명 노출이 가능하다.

제13조 벌칙

KARA의 등록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경기 특별규칙,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자동차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경기참가자들을 위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에 의거한 KARA 선수 등록규정에 따라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선수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KARA 회원이어야 하며, 본 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선수 라이선스

제2.1조 선수 라이선스의 분류와 유효한 경기

2.1.1 KARA 라이선스의 경기별 참가등급은 KARA 공인 대회주최자로부터 제출 받은 특별규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별도 결정된다.

2.1.2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스포츠규정과 국제카트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표-1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점수표]

소재	국내/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점수
선수	국제	A, B	예외-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C	-
	국내	A	100
		B	70
		C	10

제2.2조 국내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자격

[표-2 신규 라이선스 취득 점수표]

내용	점수	비고
공인 레이싱팀 교육 이수자(서킷주행 1타임)	2	공인등록팀 해당, 최대 10점 취득 가능, 아마추어 팀 제외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10	3가지 중 택일 1회 한정 점수 취득 가능
공인 짐카나 대회 참가자(기록 인정시)	10	
KARA의 신규 드라이버 교육 이수자	10	

* 신규 국내 C 라이선스 취득자 대상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

내용	점수	비고
KARA 소양 교육 이수자	10	라이선스, 승급교육
공인 레이싱팀 교육 이수자 (서킷 주행 1타임)	2	공인등록팀 해당, 최대 20점 취득 가능, 아마추어 팀 제외
C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10	짐카나, 트랙데이 각 경기1회에 한정하여 최대 20점 취득 가능
B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15	
A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20	

* 국내 B, A 라이선스 승급자 대상, 등급이 바뀔 때 마다 누적 점수 '0'점 처리

- 2.2.1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2중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면허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 2.2.2 국내 선수 라이선스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라이선스 등급이 변경될 때 마다 점수는 '0'점 처리되고 단계별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 2.2.2.a 국내 C: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2.2.2.ai KARA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10점).
 - 2.2.2.a.ii KARA 공인 짐카나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10점).

- 2.2.2.a.iii KARA 신규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10점).
- 2.2.2.a.iv KARA 공인 레이싱 팀 (영구등록팀과 단기등록팀)의 교육을 이수한 자(서킷 내 스포츠 주행 5타임-10점).
- 2.2.2.b 국내 B: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2.2.2.b.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가능 점수 70점을 충족한 자.
 - 2.2.2.b.ii 국내 카트 A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공인 카트대회에서 상위 3위 이상 입상자.
 - 2.2.2.b.iii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
- 2.2.2.c 국내 A: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2.2.2.c.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점수 가능 점수 100점을 충족한 자 중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
- 2.2.3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KARA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4 포물러 레이스 라이선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포물러 자동차만이 탑승 가능하다.(라이선스에 별도의 표기를 명시)
- 2.2.5 해외 ASN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라이선스 또는 국제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 된다.

제2.3조 국제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과 승급

2.3.1 국제 C의 신청

- 2.3.1.a 국내 대회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국제 C라이선스의 신청은 국내 A라이선스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외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심의를 통과한 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드라이버 메디컬 검사 항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기관 에서 받은 메디컬 검사 결과서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2.3.1.b 카트 국제 B 라이선스 소지자. 예외 조항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L을 따른다.

2.3.1.c 자동차 및 경주차의 연구개발,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경우 KARA가 별도 심의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2.3.2 국제 B의 신청

2.3.2.a 국제 C 소지자 중

2.3.2.a.i 국내 챔피언십이나 국제 대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경험이 있는자.

2.3.2.a.ii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국내 또는 국제 공인 서킷 레이 스 경기를 10회 이상 참가한 자.

국외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2.3.2.b 국제 C 미소지자 중

2.3.2.b.i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국내 또는 국제 공인 서킷 레이 스 경기를 10회 이상 참가한 자.

2.3.2.b.ii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KARA가 공인한 국제대회에 참 가한 경험이 있는 자.

2.3.2.b.iii CIK-FIA 월드 챔피언십 또는 월드컵 경기에서 상위 3위 입상자.

2.3.3 국제 A의 신청

2.3.3.a 국제 B 승급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3.3.a.i 승급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국제 B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대회에서 5회 이상 5위 안에 입상한 자.

2.3.3.a.ii 당해 년, 혹은 전년도에 국제 B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챔피언십 대회에서 최종 5위 안에 입상한 경험이 있는 자.

2.3.4 국제 A와 B의 등급 유지

2.3.4.a 12개월 이내에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전제로 KARA의 라이선스 규정을 만족한다.

2.3.5 슈퍼라이선스 신청은 FIA 규정에 따른다.

2.3.6 국제경기 참가 필요 서류

2.3.6.a 국제경기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선수 라이선스', '메디컬 의료카드', '선수 비자'이며, 국제경기 참가자는 경기 참가 전에 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KARA에서 발급한다.

제2.4조 카트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2.4.1 카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청 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과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2.4.1.a 카트 국내 D의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승급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1.b 카트 국내 C의 신청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2 카트 국내 C, D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의 카트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KARA에 등록된 카트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2.4.3 승급

2.4.3.a 카트 국내 C에서 카트 국내 B로의 신청

2.4.3.a.i 카트 국내 C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카트 국내 C 소지 경기)에서 3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2.4.3.a.ii KARA의 카트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KARA에 등록된 카트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자.

2.4.3.b 카트 국내 B에서 카트 국내 A로의 신청

카트 국내 B의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카트 국내 B 소지 경기)에서 3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해당기

간 참가대회에서 상위 33% 이상을 기록한자.

2.4.3.c 카트 국제 D의 신청

1) 만 12세(라이선스 신청 해) 이상인 자.

2.4.3.d 카트 국제 C의 신청

2.4.3.d.i C-Junior

1) 만 12세(라이선스 신청 해) ~ 만 14세(라이선스 발급일)인자.

2.4.3.d.ii C-Restricted

1) 만 14세(라이선스 신청 해) 이상인 자

2.4.3.d.iii C-Senior

1) 만 14세(라이선스 신청 해) 이상인 자.

2.4.3.e 카트 국제 C에서 카트 국제 B로의 신청

2.4.3.e.i 만 15세(라이선스 신청 해) 이상인 자로써 승급 신청 전 24개월 동안 3개의 국내 또는 국제 대회에서 상위 10위 이상인자. 단, 3경기 중 적어도 1경기는 국내 챔피언십 또는 국제 경기여야 한다.

2.4.3.f 카트 국제 B에서 카트 국제 A로의 신청

2.4.3.fi 만 15세(라이선스 신청 해) 이상인 자중 승급 신청 전 24개월 동안 챔피언십 또는 대회의 단일 경기(Single Competition)로 진행되는 CIK-FIA 챔피언십, 트로피, 컵에서 상위 33% 성적 보유자.(챔피언십 결승 결과 상위 33%가 34명이 넘을 경우, 나머지 선수들은 잠정적 A 취득 가능자로 예선히트 이후 중간 순위를 바탕으로 결정) 또는 시리즈 (more than one competition)로 진행되는 CIK-FIA 챔피언십, 트로피, 컵에서 점수 포인트(Scored Point)를 획득한 자. 또는 국제 B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3개의 국제 경기에서 상위 33% 성적 보유자.

2.4.4 국제 카트 라이선스 승급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2.4.5 슈퍼 카트 라이선스는 만 18세 이상인 자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2.4.6 국제 카트 라이선스 등급유지에 관한 사항은 국제 카트 위원회(CIK-FIA)의 규정에 따른다.

2.4.7 추천에 의한 신청: KARA에 가입한 공인 팀 또는 공인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

은 자로서 별도 규정된 훈련 주행량 증빙을 함께 제출한 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 2.4.8 해외 ASN 카트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카트 라이선스 및 국제 카트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 된다.

제2.5조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

- 2.5.1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 2.5.1.a 드리프트 국내 D4의 신청

드리프트 국내 D4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이론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 2.5.1.b 드리프트 국내 D3의 신청

드리프트 국내 D3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실습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2.5.2 승급

- 2.5.2.a 드리프트 국내 D3에서 드리프트 국내 D2로의 신청

- 2.5.2.ai 드리프트 국내 D3 소지자로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3 소지 경기)에서 5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2회 이상 입상한 자.

- 2.5.2.b 드리프트 국내 D2에서 드리프트 국내 D1로의 신청

- 2.5.2.b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12개월 내에 KARA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시리즈 입상자.

- 2.5.2.bi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12개월 내에 KARA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5회 우승자.

2.5.3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의 신청

- 2.5.3.i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는 FIA 규정에 준한다.

제2.6조 국제 R 선수 라이선스

국제 R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 A의 소지자 중 국제 로드 경기 (엘리, 크로스컨트리 엘리, 힐 클라임등) 출전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7조 기타 경기에 대한 선수 라이선스

국제 자동차 경주 카테고리에 등재 되어 있는 기타 경기 (히스토리, 트럭 레이싱, 스피드 기록 도전 경기 등)에 대하여서는 FIA ISC 부칙 L에 의거하여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8조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서류

- 2.8.1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한 후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KARA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2.8.2 만 19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부, KARA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KARA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8.3 해외 ASN의 라이선스 소지 경험이 있거나 해외 레이싱 스쿨을 수료한 사람이 KARA 선수 라이선스의 취득을 원할 경우 자신이 활동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외ASN 라이선스 사본이나 해외 레이싱 스쿨 수료증 등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 2.8.4 선수 라이선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8.5 상기 신청접수 및 방법은 KARA가 지정한 전산 등록망(KISS)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필요 시 KARA 사무국이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제2.9조 선수 라이선스의 유효기간과 연도갱신신청

선수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국내 라이선스는 발행일로부터 1년, 국제 라이선스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0조 선수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

- 2.10.1 KARA는 해외 ASN에 의해 발급된 유효기간 중의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가 국

내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였을 시 해당 ASN의 승인서류 첨부와 해당 해외 라이선스 포기를 전제로 승인한다.

- 2.10.2 KARA가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의 소지자는 외국의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10.3 모든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선수 라이선스를 즉시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 2.10.4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 라이선스는 자격 취소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 라이선스를 KARA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11조 선수 라이선스 신청 자격의 제한

- 2.11.1 KARA는 적합한 이유와 함께 선수 라이선스의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다.

제2.12조 휴면 라이선스 보유자

- 2.12.1 KARA 공인대회 30회 이상 참가자는 최종 취득한 라이선스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 2.12.2 KARA 공인대회 30회 미만 참가자가(5년 이내 라이선스 취득 이력이 없을 때)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등급의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오피셜 라이선스

제1.1조 오피셜

KARA가 공인하는 경기에 심판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오피셜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과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책임과 권한, 임무가 정해지며 그 등급이나 자격이 주어진다.

제1.2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 등급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직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위원장	A1	위원장급
	A2	
선임	B1	선임급
	B2	
요원	C1	일반요원
	C2 / D	
심사위원	S+	심사위원
	S1	
	S2	
요원	E	소방, 의료, 기타 특수직

제1.3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1.3.1 오피셜 라이선스는 KARA가 지정한 전산 등록망(KISS)을 통하여 입력 항목을 빠짐 없이 기재한 후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3.2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및 승급 자격을 갖추었거나 KARA에 등록된 경기 주최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대상자가 된다.

- 1.3.3 만 19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보호자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1.3.4 해외에서 활동한 경우 활동한 국가의 경력증명서나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5 외국인의 경우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KARA 사무국의 심사에서 한국어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 1.3.6 심판원 라이선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이외의 신청자는 KARA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1.3.7 KARA는 접수된 오피셜 신청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미 수수료가 납부되었다면 이를 환불한다.

제1.4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 1.4.1 **국내 C2, D**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4.1.a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 1.4.1.b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일반교육 수료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 1.4.1.c 경기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 자. 국내 D 라이선스는 공인경기 2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6개월 이내 C2 라이선스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C2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다.
- 1.4.2 **국내 S2**
국내 경기 주최자, 조직위원회 혹은 공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KARA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4.3 **국내 E**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제1.5조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 1.5.1 **국내 A1에서 A+로의 신청**

1.5.1.a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옵저버)을 이수한 자 중 KARA 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1.5.2 국내 A2에서 A1으로의 신청

1.5.2.a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또는 24개월 이내에 7회 이상의 공인 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KARA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자.

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옵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옵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5.2.b KARA는 상황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별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다.

1.5.3 국내 B1에서 A2로의 신청

B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

1.5.3.a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자. 단,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기술과 기록 파트는 이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

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옵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옵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A2 라이선스 신청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1.5.4 국내 B2에서 B1으로의 신청

B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5.4.a 36개월 이내 공인 경기 5회 이상 참가한 자.

1.5.4.b 36개월 이내 공인경기에 3회 이상 참가하고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1.5.5 국내 C1에서 B2으로의 신청

C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 시험을 통과한 자.

- 1.5.5.a 36개월 이내 공인 경기 5회 이상 참가한 자.
- 1.5.5.b 혹은 36개월 이내 공인 경기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KARA가 인정한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5.5.bi 또는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5.6 국내 C2에서 국내 C1으로의 신청**
C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5.6.a 36개월 이내 공인경기 5회 이상 참가한 자.
- 1.5.6.b 혹은, 24개월 이내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 1.5.6.bi KARA가 실시한 현장 교육을 수료했거나
- 1.5.6.bii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받아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5.7 국내 S1에서 S+로의 신청**
- 1.5.7.a S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중 KARA의 교육을 의무 참석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5.8 국내 S2에서 S1으로의 신청**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5.8.a 국내 S2 자격을 갖춘 자 중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1.5.8.b 국내 S2 취득 후 60개월 이내 공인경기에서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1.6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 시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진다. 단, A2, A1라이선스는 등급 유지조건 미충족 시 관련 위원회 심의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 유지 또는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6.1 국내 A2, A1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경기 3회 이상 참가
- 1.6.2 국내 B2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
- 1.6.3 국내 B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
- 1.6.4 국내 C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
- 1.6.5 국내 C2
24개월 이내에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

제1.7조 KARA 오피셜 교육 및 세미나 참가의 인정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참가는 공인 경기 1회의 참가로 인정하며 이는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및 등급 유지 자격에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9조 오피셜 임무

경기 참가 시 임무는 자격에 상관없이 하향 배치 될 수 있다.

제1.10조 오피셜 교육

- 1.10.1 KARA는 오피셜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10.2 KARA는 라이선스 등급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특정 교육 이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11조 오피셜 교육의 의무

KARA의 오피셜 교육은 오피셜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오피셜은 라이선스 등급 유지와 승급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조 규정의 적용 및 시행

제2.1조 벌칙

2.1.1 오피셜은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 등 KARA가 수시로 공표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되고, 벌칙은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2.1.1.a 경고
이 벌칙을 받은 오피셜에게 KARA는 서면으로 경고 이유와 내용을 통고한다.

2.1.1.b 등급 강등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의 라이선스 등급은 1단계 하향된다. 이 벌칙은 Non-Graded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1.c 자격 정지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오피셜 라이선스에 따르는 모든 자격과 권한이 정지되며 KARA 공인 경기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정지 기간 안에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라이선스 갱신은 정지 기간 만료 후에 가능하며, 제 1.6조의 등급 유지자격을 심의할 때 정지기간도 포함된다.

2.1.1.d 라이선스 취소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경과 기간 중에는 라이선스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KARA에서 정한 경과 기간이 지나면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나 취득 가능한 라이선스 등급은 KARA의 재량에 속한다.

2.1.1.e 제명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라이선스 신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2.1.2 비공인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제2.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 시 본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경기의 신청과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세부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경기 총괄

- 2.1 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국내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에 대한 인증을 총괄한다. (국내 스포츠규정 참조)
- 2.2 FIA(국제자동차연맹)는 국제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 인증에 대하여 총괄한다. (국제 스포츠규정 참조)

제3조 경기 명칭 사용

- 3.1 국내에서 조직되는 국내 경기의 챔피언십(Championship), 컵(Cup), 트로피(Trophy), 챌린지(Challenge), 한국(Korea), 전국의 명칭은 KARA에서 관리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3.2 국제(International) Championship, Cup, Trophy, Challenge의 명칭은 FIA에서 관리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3.3 상기의 명칭은 영어 또는 그 외의 외국어의 명칭 그리고 동의어, 약칭에 대해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4조 경기의 등급

- 4.1 국제 경기 : 국제 스포츠규칙(ISC)에 정의된 경기
- 4.2 국내 경기 : KARA 국내 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

제5조 경기 주최, 주관, 후원의 정의

경기 개최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1 '주최'라 함은 경기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로 정의한다.

- 5.2 '주관'이라 함은 경기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경기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한다.
- 5.3 '후원'이라 함은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신뢰성 등을 위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5.4 '협찬'이라 함은 행사에 필요한 재정,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6조 경기 공인

FIA의 ISC(International Sporting Code)와 KARA 국내스포츠 규정에 자동차 경기로 정의되는 경기는 모두 KARA의 공인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7조 자동차 경기 공인 범위

- 7.1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 대한 안전시설 검수
- 7.2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
- 7.3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의 공식 기록 인증
- 7.4 경기 운영 오퍼셜 라이선스 인증
- 7.5 경기 운영 방안 검수
- 7.6 경기용 차량 및 선수 안전 장비 호몰로게이션 인증

제8조 공인 경기의 혜택

- 8.1 FIA의 ISC와 KARA 국내 스포츠규정에 의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
- 8.2 경기 기록을 영구히 인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타 ASN에서 기록이 인정된다.
- 8.3 KARA 파견 심사 및 감독관 파견으로 지속적인 경기 운영 평가를 통해 경기의 질 향상
- 8.4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는 별도위원회가 조직·구성되어 분쟁을 조정한다.
- 8.5 KARA는 선수, 팀, 회원 단체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다.

제9조 KARA의 의무

- 9.1 국내자동차경기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선수, 오피셜의 자격을 부여한다.
- 9.2 KARA는 경기 주최자가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 대회공인을 신청할 경우 대회공인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한다.
- 9.3 KARA는 경기 주최자가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9.4 KARA는 경기 주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피셜 인력 및 보유한 장비를 지원한다. 단,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경기 주최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경기 주최자의 의무

- 10.1 경기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10.2 조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회사무국, 심사위원회, 경기위원회로 구성된다.
- 10.2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FIA 규정과 KARA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3 경기 중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 있다.
- 10.4 경기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KARA에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10.5 경기 안전 대책 강구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 10.6 만일의 응급 사고를 대비하여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10.7 경기 참가자, 오피셜, 관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10.8 경기 참가자 접수 시 KARA 라이선스 확인 후 참가 접수를 받아야 한다.
- 10.9 경기 주최자는 경기가 진행되는 서킷이나 코스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공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포함하고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기 주최자의 권리

- 11.1 대회 주최자는 KARA의 허가 조건으로 KARA, FIA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 11.2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방송중계권판매, 광고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등은 모든 상업적인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11.3 주최, 주관, 후원자는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11.4 대회 주최자는 경기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경기 공인 신청

- 12.1 경기 주최자는 경기 시리즈 등록과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2 경기 시리즈 등록은 당해 연도 전체 일정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며 매 경기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 KARA의 승인 하에 경기 공인접수가 완료된다.
- 12.3 경기 주최자는 경기 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경기 공인 신청

제출 서류	접수 기한
① 시리즈 등록 신청서 [별지1. 양식 참조]	연 초 또는 경기 2개월 전 까지
② 경기 규정(스포츠, 기술)	
③ 공인허가신청서 [별지2. 양식 참조]	대회 개최 5일 전 까지
④ 대회특별규칙서	
⑤ 대회 공인비	
⑥ 경기 조직도	
⑦ 드라이버 명단	대회 개최 3일 전 까지
⑧ 오피셜 명단	

⑨ 보험 가입 증서(드라이버, 오피셜, 경기참가자, 관중)	대회 개최 2일 전 까지
⑩ 응급 대책(Medical Plan) [별지3. 예시 참조]	
⑪ 경기 타임 테이블	대회 개최 3일 전 까지
⑫ 경기장 사용 승인서	KARA 요청 시 제출

국제 경기 공인 신청

제출 서류	접수 기한
① 국제 경기 주최자 대회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경기 3개월 전 까지
② 국제 경기 주최자 경기 승인서 (국제 경기 대회주최자 발급)	
③ 해당 국제 경기 대회 특별규칙서(스포츠, 기술) 국문 및 영문	대회 개최 2개월 전 까지
④ 대회 공인비	대회 3주 전 까지
⑤ 경기 조직도	대회 개최 7일 전 까지
⑥ 드라이버 명단 (해당 ASN의 국제 라이선스, 경기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	
⑦ 오피셜 명단	
⑧ 보험 가입 증서(드라이버, 오피셜, 경기참가자, 관중)	
⑨ 응급 대책(Medical Plan) [별지3. 예시 참조]	
⑩ 경기 스케줄	
⑪ 경기장 사용 승인서	KARA 요청 시 제출

*렐리 대회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12.4

경기 후 주최자의 제출 서류

경기 주최자는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경기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국민은행 59860 10408 1965,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13조 모터스포츠 캘린더 등록

- 13.1** 캘린더 등록신청은 KARA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소정의 방법으로 KARA에 제출 한다.
- 13.2** 국제경기는 상기 사항과 함께 FIA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하여야 하고, 해당 국제경기 국제 대회주최자의 경기 승인 서류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3** 캘린더 일정 및 장소 변경
국내 각 경기 주최자가 개최하는 경기 일정, 장소, 클래스, 주최자, 경기명칭 등의 변경은 경기 개최 30일 전까지 KARA에 신청을 한다.
- 13.4** 국제 경기의 경우 FIA ISC 및 부칙, 해당 국제경기규정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경기의 국제 대회주최자의 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KARA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14조 공인 인종료

경기를 주최하고자 대회주최자는 경기 공인에 의해서 KARA가 정한 대회공인 비를 경기 공인 허가신청서와 함께 KARA에 납부하여야 한다.

- 14.1** 국내 경기 : 경기 개최 14일 전까지

14.2 국제 경기 : 경기 개최 3주 (21일) 전까지

제15조 경기 공인 허가 전 경기 특별 규칙서 공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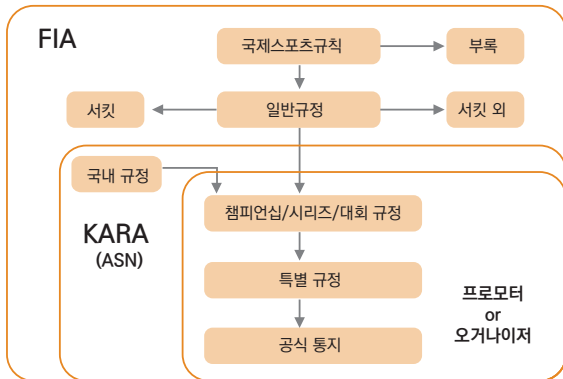
대회주최자는 경기특별규칙서의 초안을 KARA에 제출하여 승인이 있을 때 까지 내용을 공표하거나 참가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인된 경기는 KARA의 국내스포츠규칙 및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경기 특별규칙서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제16조 경기 규정

16.1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차량이 참가하여 어떤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기 주최자는 경기의 종류와 성격, 참가자격, 대회 방식등을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6.2 FIA는 전세계 모든 모터스포츠 대회가 준수 해야하는 기본규칙으로 ‘국제스포츠규칙’(ISC International Sporting Code)을 정하여 중요 개념과 용어 방식, 조직의 구성 등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칙’을 기반으로 KARA가 제정한 ‘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 대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모터스포츠 규정 단계 및 절차〉

- 16.3 경기 주최자의 경기 규정과 경기특별규칙은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보다 우선 적용된다.
- 16.4 경기 주최자의 경기 규정과 경기특별규칙에 내용이 없을 시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과 FIA ISC에 의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 FIA ISC는 최상위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 16.5 아래 표는 국제 스포츠 규칙에서부터 공식통지까지 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의 주체와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규정의 종류	제정/변경의 주체	규정하는 내용
국제 스포츠 규칙	FIA	모든 모터스포츠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모든 규정을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원칙.
일반 규정	FIA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와 서킷이 아닌 장소에서 열리는 경기 각각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국내 규정	FIA/ASN	국내에서 열리는 경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챔피언십/시리즈/ 대회 규정	주최자	각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와 그에 속하는 대회, 또는 챔피언십이나 시리즈에 속하지 않는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특별 규정	주최자	챔피언십/시리즈에 속한 특정한 대회에 적용할 변경/추가 사항이나 챔피언십/시리즈가 진행되는 도중에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
공식 통지	주최자레이스 컨트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자세한 내용. • 규정의 내용 가운데 더 명확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 • 대회 진행 도중에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또는 그리고 대회 도중 주최자와 팀, 선수간 합의를 통해서 경기 운영이나 진행에서 변경되는 사항.

<모터스포츠 규정의 종류 및 내용>

제17조 경기 취소

- 17.1 경기 주최자는 계획한 국내 경기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15일 전까지 KARA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17.2 국제 경기의 경우 해당 국제 경기 규정 및 FIA ISC 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소와 연기를 해야 하며 경기 취소 시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18조 공인 취소

KARA는 경기 시작 전, 경기 진행 중, 경기 후 해당 경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8.1 경기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경기 운영 미숙, 안전 조치 미이행, 기타 사업적 권리의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 18.2 경기 준비 또는 경기 후 처리 및 해당 경기의 공인을 이용하여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 심판원,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8.3 경기의 준비 또는 경기 후 처리 및 해당 경기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8.4 KARA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8.5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8.6 공인 취소의 경우 공인 인증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9조 대회 공인비의 반환

경기 주최자가 계획한 경기를 취소하고자 할 때 KARA는 다음의 경우에서 대회 공인비를 반환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회 공인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19.1 천재지변으로 경기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
- 19.2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20조 경기 취소 대회주최자에 대한 제재

KARA로부터 공인 받은 공인 경기의 주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경기 개최를 포기할 경우 해당 경기 주최자는 당해 연도 경기주최 자격은 물론 차기 연도 경기 주최자 자격 또한 상실할 수도 있다.

제21조 국제경기의 취소 및 변경, 연기에 대한 수수료

- 21.1 국제경기는 FIA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되며 해당 경기가 변경 및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 21.2 취소 및 변경, 연기에 대한 수수료는 KARA가 지정한 금액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21.3 지정한 기한 내에 미입금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2조 상업적 권리

경기의 상업적 권리는 KARA가 직접 주최, 주관, 경제적 후원 및 참여를 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 경기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경비의 부담

- 23.1 경기 주최자는 경기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23.2 경기 주최자는 주관, 후원, 협찬자와 함께 경비의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 손해의 책임

경기 주최자는 경기 준비, 경기 운영, 경기 사후 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KARA는 KARA가 직접 주최 혹은 주관하지 않는 한 공인 경기의 경비 및 제반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일체 법적, 물적, 재산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공인 명칭의 사용

KARA의 공인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공인 명칭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 명칭 사용 시 공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벌칙을 가할 수 있다.

또한 KARA는 허가 받지 않은 공인 명칭 사용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

국내경기 주최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KARA 사무국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6.1 관중에 대한 보험

주최자(또는 시설 소유자)는 경기 개최 기간 중 관중에 대해 경기 중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26.2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 오피셜, 관계자에 대한 보험

경기주최자는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 오피셜(심판원),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제경기의 경우 FIA ISC 및 부칙, 해당 경기규정에서 요구하는 보험 가입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에서 해당하는 합당한 보험증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인경기의 심판원(오피셜) 및 감독관

27.1 공인경기 운영은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 오피셜 및 마셜만이 운영할 수 있다. 위반 시 대회주최자에게 벌칙이 부여된다.

27.2 KARA는 공인된 경기에 1인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27.3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피셜은 해당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레이스디렉터, 심사위원, 경기위원장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경기의 심사

공인경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2명의 경기 심사위원과 KARA에서 파견하는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한다.

- 28.1 심사위원의 자격은 KARA에 심판원 A+ 혹은 S로 등록된 자.
- 28.2 심판원 등록자로서 KARA가 특별히 인정한 자.
- 28.3 KARA가 심판원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 28.4 경기 주최자는 공인 경기에 한하여 KARA에 1인 이상의 KARA 심사위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8.5 심사위원회의 책임

- ①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 특별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공식 스케줄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 ③ 공식 스케줄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앰블런스, 소화기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 ④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줄의 시작을 지시한다.
- ⑤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28.6 심사위원회의 권한

- ①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 ② 대회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히트의 구성이나 경기 주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순위의 변경 또는 출장 정지(실적)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 ④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차량이나 선수를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참가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팀 또는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 ⑤ 정당한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⑦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최종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 ⑧ 기술 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⑨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 ⑩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8.7 심사위원의 제한

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 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안전

경기 주최자는 해당 경기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경기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KARA의 판단 하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의료 지원,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별지3. 예시 참조]

경기 주최자는 매 경기마다 다음의 의료지원팀을 배치하여야 하며, 응급대책(메디컬 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

- 30.1 응급 구조사나 응급 의사가 포함된 2인 이상의 응급팀
- 30.2 2대 이상의 앰블런스(기초 종목은 1대 이상)
- 30.3 메디컬 체크를 위한 1인 이상의 의사 및 간호사
- 30.4 외과 상해에 대한 구급 장비(척추보호대, 목 보호대, 들것, 압박붕대 등)
- 30.5 화상에 대한 구급 장비(화상 드레싱 등)
- 30.6 경기장 부근 지정병원 정보(병원명, 병원담당자, 연락처, 이동거리, 이동시간)
- 30.7 소화기의 (경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 개수가 다르다) 배치
- 30.8 경기 주최자는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을 위한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 30.9 견인차나 견인차에 준하는 견인 장비가 있는 4륜 차량
- 30.10 경기장 부근 지정 소방서
- 30.11 다음은 권고 사항이다
 - ① 소생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소생약, 심전도기, 응급 소생기 등)
 - ② 소방지원차량(80리터 이상 소화액(물, 폼 소화액 등)이 들어 있는 탱크와 분사기 장착)
 - ③ 특수 구조차(유압 커터, 전기톱, 크로우바, 플라이어 등), 국제경기의 경우 FIA ISC 부칙 H의 각 경기 종류 및 카테고리별 응급 및 의료, 소방, 구난 서비스 체계와 장비를 참고하여 대회 규모에 맞는 응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31조 공공기관의 협조

경기 주최자는 해당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 또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전 협조 요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필요시 KARA에 협조 공문을 요청할 수 있다. KARA는 경기 주최자에게 공공기관 협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통보 의무

경기 주최자는 KARA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ARA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인 및 경기 주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기타 자동차경기 승인 및 운영

이외의 내용은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에 따른다.

제34조 기록 용어

국내 경기에서 사용되는 기록 및 용어들은 아래와 같다.

34.1 경기 결과 용어

용어 표기	의미	내용
DNS(Did Not Start)	해당 경기 출발을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세션 공식 참가 엔트리는 있으나 해당 세션에 불참한 경우
DNF(Did Not Finish)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체커기를 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승(Race)에 한하여 사용 마지막 랩에서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체커기를 받지 못하거나, 피트로 들어왔을 때도 해당 됨
RET(Retire)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중도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T의 경우 'Retire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DNF'와 병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DNQ(Did Not Qualified)	예선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예선 통과기준을 미 충족(ex. 선두 3명, Best Lap평균x107%) 해당 대회 규정에 의거, 예선 탈락자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승(Race) 특별출주 가능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NC'로 표시되기도 함
DNC(Did Not Classified)	결승 완주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결승 완주 기준(ex. 해당 클래스 선두 기준 75%)을 미 충족 순위 및 포인트 불인정 'NC'로 기재되기도 함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NQ'로 표시되기도 함
DQ(Disqualified)	실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 해당 세션 실격 처리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SQ'로 표시되기도 함
EX(Exclusion)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 해당 Round 전체 실격처리 해당 Round의 모든 기록 및 결과는 불인정되며 삭제처리 됨

Suspension	자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 ASN 또는 FIA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자격정지 심사위원회 자격정지는 해당 대회에 한하며, ASN 또는 FIA 자격정지의 경우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34.2 경기관련 용어표기

영문 용어	국내 표기	비고
Provisional	잠정	
Official	공식	
False Start	부정 출발, 플라잉 스타트	
Exceeding/Over(off) Track Limit	코너 컷팅, 코스이탈주행	
Reprimand (Blame)	훈계 < 주의 < 경고 < 엄중경고 등	Reprimand < Blame (강도가 더 높음)
Fine	벌금	
Time Penalty	타임 페널티	초 가산 벌칙에 사용
Drop of grid positions	그리드 다운, 그리드 강등	
Drop of places in the classification	순위 조정, 순위 강등	
Drive through penalty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Stop and go xx sec	스탑앤고 xx초 페널티	피트 내 지정된 페널티 구역에서 진행
Pit Lane over Speed	피트레인 속도 위반	
Investigation / should(will) be investigated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	잠정 결과에서 '조사 중' 또는 '심사 중'으로 표기
Pushing, Contact with	무싱, 접촉	

34.3 기록 결과 발표 순서 및 기록지 하단의 명기 내용

① 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과 발표 (연습 제외)

- 국제 경기 경우

Provisional Qualifying Result → Official Qualifying Result →
Provisional Grid → Official Grid → Provisional Race Result →
Official Race Result

- 국내 경기 경우

잠정 예선 결과 → 공식 예선 결과 → 공식 그리드 → 잠정 결승 결과 → 공식 결승 결과

② 기록지 하단 명기할 내용들

- 잠정 결과

- 조사 중인 사항
- 세션 중 깃발 제시(흑백반기/오렌지불기/흑기)와 해당 차량 번호
- 세션 중 페널티 이행 여부
- 의무 피트인 등 세션 동안 규정에 의거하여 지켜야 할 사항 이행 여부
- 내구 레이스의 경우 피트레인 오픈/클로즈 시간
- 적기 발령 시 제시된 랩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 (ex. 전체 랩 축소, 2랩 미만의 경우 재경기 스타트 등)
- 기타 경기 중 결정된 심사위원회나 경기위원회의 결정 사항

- 공식 결과

- 잠정 결과에 명시되었던 내용
- 심사위원회 결정 사항 ('조사 중' 또는 '심사 중'으로 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결과)

제35조 시행

위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시리즈 등록 신청서



2018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회 시리즈 등록 신청서

1. 대회 개요

대회명칭						
대회종류	<input type="checkbox"/> 서킷레이싱 <input type="checkbox"/> 카트 <input type="checkbox"/> 드리프트 <input type="checkbox"/> 짐카나 <input type="checkbox"/> 드래그 <input type="checkbox"/> 오프로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회구분	<input type="checkbox"/> 국제경기 <input type="checkbox"/> 국내경기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챔피언십 포함 대회 <input type="checkbox"/> 해외선수참가가능					
클래스	No	클래스명	차량종류	참가 라이선스	무게/출력 비율	비고
	1					
	2					
	3					
	4					
	5					

2. 대회 주최자정보

대회 주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거주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웹사이트				
담당자	이름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3. 경기 책임 오피셜

직책	이름	휴대폰	이메일	라이선스No.
심사위원				
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기록위원장				
관제위원장				



기술위원장				
코스위원장				
안전위원장				
피트/매독위원장				
의료 위원				

4. 대회 일정

라운드	날짜	장소	클래스	비고
1				
2				
3				
4				
5				
6				
7				
8				
9				

상기의 시리즈를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및 그 부칙에 준수하여 개최할 것을 서약하며, (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사항]

- 경기 운영규정
- 경기 기술규정
- 시리즈 등록비

2018년 월 일

주최단체:

신청인(이름)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귀중]

별지 2 공인허가신청서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회공인허가신청서

KARA ORGANIZING PERMIT APPLICATION FORM

1. 대회 정보(Event Information)

대회명칭 Name of Event							
대회일정 Date/s of Event							
대회장소 Venue				서킷 라이선스 번호 Circuit License No.			
서킷 일부 사용시 Partial use of Circuit	사용구역 Area for Event			총 길이(km) Distance of Circuit			
대회종류 Type of Event	<input type="checkbox"/> 서킷 레이싱 <input type="checkbox"/> 카트 <input type="checkbox"/> 랠리 <input type="checkbox"/> 짐카나 <input type="checkbox"/> 기타 Circuit Racing Kart Rally Gymkhana Other						
대회구분 Status of Event	<input type="checkbox"/> 국제경기 <input type="checkbox"/> 국내경기 International National						
특이사항 Only for National Event	<input type="checkbox"/> 챔피언십 포함 대회 Including Championship Race <input type="checkbox"/> 해외선수참가가능 Foreign Participation Event <input type="checkbox"/> 아마추어 대회 Amateur Race						
클래스 Class	No	클래스명 Name of Class	라이선스 제한 Min Req License	스타트 방식 Start Type	시작 시간 Scheduled Time		
					연습 Practice	예선 Qualifying	결선 Final
	1						
	2						
	3						
	4						
	5						
6							
참가 접수기한 Entries Open/Close							
참가 제한 Entry Restrictions							



핸디캡 Handicap	
운영규정 변경사항 Amendment of Sporting Reg.	
기술규정 변경사항 Amendment of Technical Reg.	

2. 주최자 정보(Organizer Information)

주최자명 Name of Organizer		대표자 이름 Name of President	
주소 Address			
대표전화번호 Tel.		대표팩스 번호 Fax	
웹사이트 Website			
담당자 Contact Person	이름 Name		직급 Title
	휴대폰번호 Mobile		이메일 Email

3. 경기 책임 오피셜(Senior Race Officials)

직책 Role	이름 Name	휴대폰 Mobile	이메일 Email	License No.
심사위원장 Chief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경기위원장 Clock of the Course				
사무국장 Secretary of the Meeting				
기록위원장 Chief Timekeeper				
기술위원장 Chief Scrutineer				
피트위원장 Chief Pit Marshal				
패독위원장 Chief Paddock Marshal				



코스위원장 Chief Track Marshal				
안전위원장 Chief Safety Marshal				
의료담당 Chief Medical Officer				

4. 방송 정보(Broadcasting Information)

방송 여부 Broadcasting Event	<input type="checkbox"/> 유 Yes <input type="checkbox"/> 무 No	방송할 경우 <input type="checkbox"/> 생방송 <input type="checkbox"/> 녹화방송 If yes, as live As Recorded
방송시간 및 채널 Time of Broadcasting and Chanel		

5. 기타 경기운영정보(Other Information)

드라이버 브리핑 Driver Briefing	일정 Time		장소 Venue	
메디컬 체크 Medical Check	일정 Time		장소 Venue	
병원정보 Hospital Information	후송병원 Name of Hospital		대회장소에서 거리 Distance	
	주소 Address			
	담직의사 이름 Contact Doctor		연락처 Mobile	
보험회사명 Name of Insurance				
보험내용 Coverage of Insurance	보상 범위 :			
검차 Scrutineering	장소 Venue			
	시작 시간 Starting Time			

FIA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및 그 부칙에 준수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위와 같이 대회 공인을 신청합니다.

The above organizer applies for an organizing permit for the above event, which will be 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relevant National Sporting Rules accordingly.

[구비사항]

- 경기 운영/기술/특별규정
- 경기 공인비
- 참가선수 명단 및 보험 증서 (대회시작 2일전까지 제출)



2018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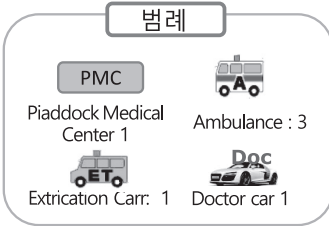
주최단체:

신청인(이름):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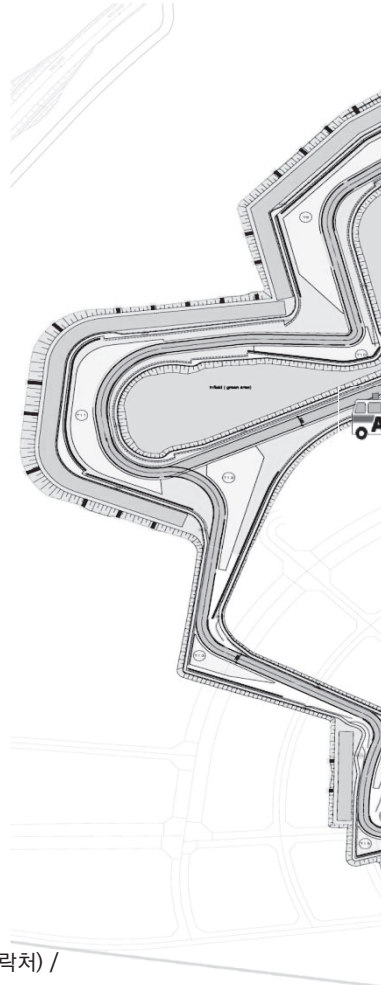
별지 3 의료 계획(Medical Plan)

※ 국내 서킷 레이스 의료계획 예시



인력 현황

구분		1일	2일	3일
		연습	예선	결승
의료	의사	1	1	1
	간호사	1	1	1
	응급구조사	2	2	2
AMB	사설	1	2	2



※의료 준비 상황

- 레이스콘트롤 : 의사 1, 간호사 1
- 응급탈출팀(Extrication) : 응급구조사 4(소방관2, 사설2)
- 경기장 도착 08:00(브리핑, 무전기, 배치등 안전위원장 확인)
- 담 당: CMO(이름, 연락처) / XX병원(담당자, 연락처) / 소방서(담당자, 연락처) / 대회본부(담당자, 연락처)
- 오피셜 : 심사위원장(이름, 연락처), 경기위원장 : (이름, 연락처) / 안전위원장 : (이름, 연락처) / 사무국장 : (이름, 연락처)



지정병원 AMB
(20분 소요)